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권 숙 자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권숙자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제3항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였고,
- 안 제10조 “응시연령” 을 7급 이상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20세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제4항 “시험위원”에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 함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 임용시험 전 과정의 점검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라 「대구 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숙자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00923126
------------	----------

발의연월일: 2023. 11. 3.

발 의 자: 권숙자, 박정환, 이선주,
이진환, 남현주, 황국주,
손범구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 시험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8조제3항)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
- 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10조)
- 시험위원 제한 사유 추가(안 제13조제4항)
 - 해당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에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제3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 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제기간 등)가 없는 자를”을 “사제기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를 제28조의2(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u>보호대상자인 사람</u>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p>제8조(응시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자</u>,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u>보호대상자</u> 또는 「<u>장애인 연금법</u>」에 따른 <u>수급자</u>----- -----.</p>
<p>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u>1. 7급 이상 : 20세 이상</u></p> <p><u>2. 8급 이하 : 18세 이상</u></p>	<p>제10조(응시연령) ----- ----- ----- -- <u>18세 이상이어야</u> ----- -----.</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p> <p>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u>사제지간 등</u>)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제지간 등</u>)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 ----- -----.</p>

<신 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
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
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제2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8조의 2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현행 제28조와 같음

【 관 계 법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①~④생략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